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217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10. 21.
판 결 선 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44,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2급을 받은 B의 부친으로서 2016. 2. 2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17

B과 공동으로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에 역시 B과 공동으로 취득하였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차량(이하 '종전 차량'이라 한다)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하였다며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949,090원, 무신고 가산세 189,8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120원 합계 1,144,0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대로 2016. 4. 23. 종전 차량을 폐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2016. 4. 23.에 이르러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친 사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2016. 4. 23.까지 이전말소 확인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17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 ·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2016. 4. 22.까지 종전 차량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설령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일 시한이 2016. 4. 23.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만으로 법령이 정한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6. 4. 23.에 이르러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호증(2016. 4. 25.자로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2016. 4. 23.에 이르러 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담당공무원은 2016. 4. 22.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6. 4. 22. 이전에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17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김영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1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끝.